



고용노동부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

수신 김 희 귀하
(경유)

제목 거짓구인광고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안내(김0희)

1. 귀하의 직업안정법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오며, ' (주)다산 '에 대한 거짓구인광고 신고사건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.

○ (주)다산 대표자 '엄 은'에 대한 조사결과, 19.6.3 워크넷 광고 등록 후 피신고인이 문제를 인식하여 19.6.10 광고 등록을 취소한 점으로 보았을 때 피신고인이 구직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거짓구인광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또한 실제 근로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인광고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 피신고인에 대하여는 추후 구직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인광고를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2.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,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(031-850-7714, 담당: 손성달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



주무관 손성달 팀장 기타 고용관리과 과전결 2019. 7. 5.
장 직무대리 조용진

협조자

시행 고용관리과-10842 (2019. 7. 6.) 접수

우 11787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143 (용현동 526-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) 3층 고용관리과 / www.moel.go.kr/uijeongbu

전화번호 031-850-7714 팩스번호 0505-130-0055 / violet315@korea.kr / 비공개(5)

"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